

축산업계

소식

92~94년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예시 축산물 29개품목, 신선·냉장닭고기 포함

정부는 93~95년에 수입개방할 농수축산물 131개 품목을 예시하였다.

92년에는 농산물 13품목, 축산물 10품목, 수산물 20품목으로 43개 품목을 개방하고, 94년에는 농산물 13품목, 축산물 10품목, 임산물 1품목, 수산물 20품목으로 44개 품목, 94년에는 농산물 14품목, 축산물 9품목, 수산물 21품목으로 44개 품목이다. 분야별로는 농산물이 40품목, 축산물 29개 품목, 임산물 1개 품목, 수산물 61개 품목이다.

이중 양계산물은 93년에 미절단 신선·냉장닭고기를, 94년에 절단 신선·냉장닭고기를 예시하였다.

이번 수입개방계획 예시는 GATT BOP 조항 졸업으로 GATT BOP위원회에 97년까지 모든 농수축산물을 개방하기로 약속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

번에 94년까지 계획을 예시했으며 95~97년 예시는 94년 3월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예시된 축산물은 92년 돼지, 시슴, 면양고기(어린면양 이외 기타), 동물 위, 기타 가금류의 육육조제품, 응고유와 크림, 비식용 육분이다. 93년에는 소의 혀, 미절단 신선·냉장닭고기, 균질화 조제·저장육, 우유(시유), 발효유(요구르트 이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우유함유제품, 벌꿀조제품, 난황이며, 94년에는 기타 소(육우·젓소 이외 몰소·코뿔소 등), 신선·냉장돼지고기, 염장돼지고기(복부살), 절단 신선·냉장닭고기, 어린면양고기, 발효유(요구르트), 커드 등이다.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3월 1일부터 곱창, 천엽 등 각종 식육부산물만 판매할 수 있는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을 신설했다.

식육부산물이 식용으로 애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시설 및 처리기준도 없이 정육점에서 비위생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을 신설, 도매의 경우 전문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이 같은 부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유통 전문판매업을 신설, 앞으로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위생문제와 허위, 과대광고표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식품유통 전문판매업자가 지도록 했다.

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 육계농장에 만연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9일 뉴캐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금년들어 전북, 전남, 경북지역 양계장에서 16, 430수가 발생 폐사하였으며, 계속 만연될 우려가

있다. 또 이병이 발생된 농가는 대부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본프로그램을 지키지 않은 농가이며 계속 방역활동이 소홀할 경우 더욱 번질 것으로 우려되어 뉴캐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다고 했다.

따라서 모든 양계농가 특히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기 쉬운 육계농가에서는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양계농가에서 해야할 예방조치는 △ 계사와 양계도구 특히 난좌를 철저히 소독, △ 올인올아웃 사육 △ 병든 닭은 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 △ 외부인 출입통제와 다른 양계농가의 방문 삼가 △ 현재와 같이 뉴캐슬병이 발생되고 있을 때는 백신접종과 동시에 증개상인의 출입통제, 차량이나 출입자의 철저한 소독 후 출입 등 위생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정보화와 농어촌개발전략 심포지엄 개최
정보문화센터, 농수축산신문 주최



정보문화센터와 농수축산신문은 지난 2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화와 농어촌 개발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농촌경제연구원 허신행 원장이 “정보화 시대의 농업전망과 개발전략”, 충북대학

교 권원달 교수가 “농수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화”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권원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정보의 효율화는 농업생산성 증대와 유통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며 현행 유통정보체계는 조직체계, 운영상, 정보내용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입제한 종축, 유제품 수입추천계획 확정
종계 95만수

농림수산부는 91년 수입제한 종축 및 유제품 수입추천계획을 확정하였다.

	'91계획량		'90실적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종 우	50두	4,250천불	117	961
종 돈	1,600	5,760	969	3,365
종 계	950천수	5,700	790	4,092
유장분말(조제분유제조용)	12,500천톤	13,200	9,398	9,898
탈지분유(공업용 카제인제조용)	380	760	200	248
수급조절분유	8,000	16,000		

※정액, 수정량, 종란은 수입한도량 제한 없이 추천

'91 아바에이카 종계경영자세미나 개최
한일농원 주최로 유성관광호텔에서

한일농원은 '91 아바에이카 경영자세미나를 지난 16, 17일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의 종계경영자와 업계관계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현농장 노태모 사장과 포천부화장 이종빈 사장이 “아바에이카 종계관리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한일농원 김영상 이사가 “아바에이카 사양관리 요점”, 서울대

학교 김선중 교수가 “뉴켓슬병 성계군에서의 발병 양상과 대책”, 종계연구소 장용원 소장이 “평사와 케이지 사육시 주의할 점”, 한일식품 윤정암 과장이 “향후 외식산업의 진행방향 및 개선방안”, 한일 사료 유택생 이사가 “한일 JRC 매직 프로종계사료 생산성 분석”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선중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성계군에서 흔히 겪는 적고 큰 산란율 감소는 대부분이 뉴켓슬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위농장의 규모를 줄이고 완전한 올인올아웃의 시행과 ND오일백신을 2번 내지 3번까지의 접종을 권장하였다.

농수축산물 수입절차 완화 물가대책용으로 이용

정부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273개 농수축산물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수급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품목과 수량, 수입자 등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수출입공고제도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273개 농수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나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수출입공고 제도 개정으로 물가대책차원에서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농수축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미곡담보융자제도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미곡담보융자제도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곡담보융자제도는 수확기에 농가에서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농가의 벼를 담보로 썬이자로 융자해주고 단경기에 팔아 융자금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가는 쌀값이 연중 최

저시세를 형성하는 수확기에 쌀을 처분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정부는 농민의 수매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직접수매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농어민후계자 1천3백만원씩 지원 축산부문 443명

농림수산부는 올해 1천5백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해 1천3백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또 예비후계자제도를 도입하여, 약 1천5백명 정도의 예비후계자를 사전에 선정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확인 평가하여 92년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년에 선정된 축산부문 후계자는 4백43명이다.

서울대 오봉국 교수 정년퇴임 모교에서 고별강연회 가져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오봉국 교수는 지난 13일 모교 강당에서 정년퇴임 고별강연회를 선후배 동료교수, 후학 등 3백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가졌다.

지난 52년부터 40년간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오교수는 산학협동을 적극 실천하는데 노력을 계속해왔다.

오봉국 교수는 그동안 20여권의 저서와 12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한국가금협회, 한국축산학회, 한국육종학회, 한국가금학회, 세계가금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연합회, 한국농업과학협회 회장을 맡아왔다.

한편 오교수는 양계협회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국내 축산업 보호와 공중보건 향상 위해

농림수산부는 축산물 수입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출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업무를 보완키 위해 지정검역물의 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동물, 육류, 양모 등에 대한 검역관리 관계규정의 일부가 개정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지정검역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 물품중 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실시할 경우 신청절차 및 요건을 정하였다. 또 소, 말, 돼지 등의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종류와 양, 시기 등을 동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서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유통전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육, 돈육 등 수입육류의 전용 보관창고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자체관리 수의사를 상주하도록 한다.

농림수산부 초지사료과장에 구자순씨 발령

농림수산부는 지난 8일 공석중이던 초지사료과장에 구자순 양곡관리과장을 전보 발령했다.

구자순 과장은 경북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농림수산부에서 30년간 근무해왔다. 농산물비료과장,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양정국 양곡관리과장 등을 돌면서 합리적이고 무리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로 알려지고 있다.

물먹인 쇠고기 단속 강화

수분·단백질 비율 검사제도 도입

농림수산부는 물먹인 쇠고기 단속을 위해 수분과 단백질 비율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정상적인 쇠고기의 경우 수분함량이 75%로 단백질함량 21%의 3.5배이다. 따라서 수분함량이 단백질함량의 4.5배 이상일 때는 물먹인 쇠고기로 간주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는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서울로 반입하는 도축장부터 중점 적용키로 했다.

한편 도축장에 지육과 내장을 분리해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또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개정하여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강제급수와 확대행위 외에 지육에 대한 물주입행위의 금지 및 처벌규정을 추가로 삽입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물먹인 소를 도축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계산물 가격안정대 설치 불가

농림수산부 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 회신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22일 농축산업관련 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 및 금후조치계획을 회신했다.

○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용의는? 그것이 어렵다면 그 세수입을 농어촌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 검토의견

-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배합사료등 축산기자재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에는 의료보협용 의약품, 도시영세민 생활용품등 타분야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세제도의 형평상 영세율 적용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영세율 적용보다는 그 상당액 만큼 양축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 수입과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징수 상당액을 농업 및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금후조치계획

-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상당액을 농어촌발전 기금의 구조조정 계정에 세입토록하여 축산분야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 양계부문에 대한 가격안정대 적용 필요

○ 검토의견

- 축산물가격안정대는 장기적인 가격동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대상으로 상·하한가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양계산물은 계절에 따른 소비의 불균형 등으로 가격동락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가격안정대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금후조치계획

- 민간주도의 수급조절 기반 구축
- 닭고기, 계란 수매
자금지원 : 32억원

- 계열화사업 확대 지원
- ('91) 12개업체 → (2001) 24
- 계란집하장 설치 확대
- ('91) 6개소 →

○ 축사(계사)등 농업용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시 허가규모에 관계없이 농지조성비 전액 면제 요청

○ 검토의견

- 현재 축사등 농업용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시 신고의 경우는 농지조성비를 전액 면제하고 허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감면하고 있으므로

농어가	{	절대농지 : 1,500㎡이하 전액면제,
		1,500㎡초과 50% 감면
	}	상대농지 : 3,000㎡이하 전액면제,
		3,000㎡초과 50% 감면

농가가 양축시설로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는 신고면적을 포함하여

절대농지 3,000㎡	}	까지 면제 가능함
상대농지 4,500㎡		

- 양계의 경우 { 10,000수미만은 부업규모로
30,000수까지는 전업규모로
30,000수이상은 기업규모로 볼 수 있으며

상대농지 4,500㎡는 전업규모인 30,000수까지는 양계가 충분히 가능한 시설 소요면적이므로, 부업 및 전업 규모의 양계농가는 조성비 감면혜택을 보고있으며, 폐수처리 시설까지도 농업용 시설 및 양축시설의 범위에 포함 되도록 조치한바 있음.

○ 금후조치계획

- 양축시설 농지전용신고 범위를 1,500㎡에서 3,30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91.3.2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중